개선효과

- 인프라 구축 파급
  -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복합충전소 구축 사례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의 학습 및 파급효과
- 보편적 에너지 보급
  -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진 · 출입로 위치하여 수도권 서남부 수소차 충전을 담당하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구현
- 민 · 관 협력 모델
  -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제시 및 협업을 통한 선제적 행정사례 제시

NEWS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충전소' 개소

광명 오토랜드에 수소충전 1기·전기충전 6기 설치
하이넷, 환경부 지원받아 연내 수소충전기 1기 증설

최인영 기자 2022.05.04 13:10:00 수정 2022.05.06 07:52:41 1528호 가 가

하이넷 광명 소하 수소충전소

[가스신문 = 최인영 기자] 수소충전기와 초고속 전기충전기를 갖춘 복합충전소가 경기도 광명에서 상업충전을 시작했다.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에서 문을 연 것이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하이넷이 준공한 27번째 수소충전소인 하이넷 광명 소하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수소·전기충전기를 설치했다. 4,381㎡ 부지에 하이넷 수소충전기 1기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E-pit) 전기충전기 6기를 갖추고 있다.

하루 최대 60대의 수소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260kW 초고속 충전기 4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기를 설치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적용해 친환경 복합충전소를 구현하고 있다.

앞서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시운전을 하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첫 사례로서 지난해 6월 기아, 광명시, 하이넷이 업무협약을 통해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72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04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부서 경기도 수질정책과 ☎ 031-8008-6922

개선배경

-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로 인하여 규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주거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또한, 규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개별처리 · 방류로 폐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수질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수 : 2010년 8,210개소 → 2019년 11,977개소 (연평균 377개소 증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폐목재 및 폐의류 재활용시설 입지불가 ● 농림지역, 보전 · 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등	● 폐가구공장 잉여자재(폐목재) 및 폐의류 재활용시설 일부 입지허용 ● 주거지역 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시 농림지역, 보전 · 생산관리지역 일정부분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조건부 허용

- 「팔당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을 통해 폐수발생이 없는 폐목재 · 폐의류 재활용시설에 대해 일부 입지를 허용하고,
- 주거지역 내 난립한 소규모 공장 집적화를 위해 농림지역, 생산 · 보전관리지역의 일정비율(최대 50%)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

추진과정

’19. 10. 道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수립

’19. 11. ~ ’20. 05. 팔당 특별대책지역 규제합리화 T/F 회의 추진

’20. 06. 30.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 마련 및 환경부 건의

’20. 07. ~ ’22. 02. 관계기관 회의 및 국회 방문 협조 추진

’22. 02. 10. 특별대책지역 고시 행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

’22. 05. 03.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개정 완료

개선효과

- 개별공장 재배치 ·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폐수관리(공공처리)와 엄격한 기준 적용(BOD 40mg/L → 10mg/L)을 통한 상수원 안전성 확보

(단위 : mg/L)

구 분	개별처리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공공폐수처리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Ⅰ	Ⅱ	Ⅲ	Ⅳ
BOD	40	80	120	30	10	10	10	10
TOC	30	50	75	25	15(25)	15(25)	25	25
SS	40	80	120	30	10	10	10	10
T-N	30	60	60	60	20	20	20	20
T-P	4	8	8	8	0.2	0.3	0.5	2

- 주거지역 내 난립한 공장을 이전하여 계획입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폐수 발생 우려가 없는 일부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허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05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세부 운영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5564

개선배경

-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제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됨.
- 다만, 해당 사항의 운영을 위하여 공사계약의 신규 및 변경 계약 체결 시 발주청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미반영 시 산출내역서의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발생함.

[사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율로 작성되는 사항으로 발주청에서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임의로 반영하는 경우 재료비 또는 경비 단가를 하향시키거나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등의 제경비를 하향시켜야 하는바 설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수조건」 세부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소지를 제거**

개선내용

개선 전

- 계약(변경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체결 단계에서 발주청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 미반영 시 반영을 요구

개선 후

-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 항목을 삭제하고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신설)’ 징구 및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공사’임을 사전 안내 후 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특수조건」의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함.